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6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 주파수의 중복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 위성궤도·위성주파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 조정에 관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제1항제4호)

위성 발사 수요 증가에 따른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의 중복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나.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안 제19조의11 신설)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하려는 기술에 대한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다.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등(안 제21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해당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위치 및 지형도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게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0. 00. 00. ~ 00. 00.) 결과, 0000
- 3) 행정규제 : 000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제3항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를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로,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공무

원”을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측”을 “해임하거나 해측”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시행”을 “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점검”을 “점검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단서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않다”로 한다.

제19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로,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을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9부터 제19조의11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립 대학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
하여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절차 등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개
방·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야 한다.

제19조의10(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법 제18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약
중 시제품(試製品) 제조 계약 및 최초로 맺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총액이 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
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명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할 것
2. 우주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수행된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의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안보우

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u>우주개발 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제1조의2(<u>준궤도발사체</u>)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③ (생략)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
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
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수립)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
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
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
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1.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

공무원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공무원

3. (생략)

④ (생략)

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 ⑨ (생략)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생략)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

----- 안보
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해임하거나
해촉-----.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사업의
기획·조정 및 시행

3.·4. (생략)

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6. (생략)

③·④ (생략)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9조의7(위성정보 보안업무)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

2. -----
----- 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4. (현행과 같음)

5. ----- 점검 지원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

-----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 -----

-----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위성정보 보안업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법 제17조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
----- 시행해야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 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립 대학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
관에 대하여 우주사업자에게 개
방·활용하게 할 우주개발 기반
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절차 등의 정보의 제
공이나 그 밖에 개방·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9조의10(우주개발사업의 지체
상금) 법 제18조의3제5항 각 호
의 계약 중 시제품(試製品) 제
조 계약 및 최초로 맺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총액이 이 계
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명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

<신 설>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할 것
2. 우주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신 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
적 및 지정일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
면

4. 그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
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

	<u>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u> <u>3.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u> <u>4.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수행된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4625